

판매점계약서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인 ○○주식회사(이하 "Company")와 ○○법인으로서 주소가 ○○인 ○○주식회사(이하 "Distributor")간에 20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다.

제 1 조 【정 의】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제품" 또는 "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Company는 임의로 계약제품 또는 그 부품의 디자인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생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품 명 :
 - 2) 사 양 :
2. "판매지역"은 ○○○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수시 변경 할 수 있다.
3.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Distributor나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직·간접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또한 판매지역 외로 판매할 자에게 판매하지도 못한다.

제 2 조 【지명 및 수락】

1. 본 계약기간 및 조건에 따라, Company는 Distributor를 판매지역 내 제품의 (독점)/(비독점) 공급자로 지명하고 Distributor는 이를 수락한다.
2. Distributor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과 경쟁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구매·수입·수출·분배·취급할 수 없다.

제 3 조 【발주 및 선적】

Company에 대한 발주 시, Distributor는 제품 및 필요수량을 명기하고 포장 인보이스 및 선적에 관한 정확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발주는 Company가 그 재량으로 수락했을 때에만 구속력이 있다. Company는 Distributor가 제5조의 최소구매량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제품을 Distributor에 공급하기로 합의한다.

제 4 조 【가격 및 대금지급】

1. 제품가격은 당사자가 수시 정한다. 가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Company는 Distributor에 대한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Distributor는 Company의 발주수락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일 이내에, Company가 만족하는 일류 국제은행을 통하여 Company와 그 지명자를 수혜자로 하는 취소불능 일람불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3. 결제통화는 ○○로 한다.
4. Distributor는 Distributor국의 법에 따라 Company 또는 Distributor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 기타 부과금을 그 책임으로 지급해야 한다.
5. Distributor는 제품의 재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할인이나 리베이트 등을 포함하여 판매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잃을 정도의 고가를 설정할 수 없으며 Company에게 변경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
6.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한 Company가 제시한 가격 및 제5조의 최소구매물량은 (FOB) ○○(지역)가격 기준이다.

제 5 조 【최소구매량】

1. Distributor는 Company로부터 다음의 최소물량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1) 제1차 계약년도
 - (1) 기 간 : 20 년 월 일
 - (2) 구매량 :
 - (3) 가 격 : 일금 _____ 원정 (W _____)
 - 2) 제2차 계약년도
 - (1) 기 간 : 20 년 월 일
 - (2) 구매량 :
 - (3) 가 격 : 일금 _____ 원정 (W _____)
 - 3) 제3차 계약년도
 - (1) 기 간 : 20 년 월 일
 - (2) 구매량 :
 - (3) 가 격 : 일금 _____ 원정 (W _____)
2. 본 조항의 구매는 제품이 Company로부터 선적된 것을 기준하며 Company에 반품된 분은 제외한다.

제 6 조 【기술지원】

1. Company는 Distributor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정보 및 설명서, 제품의 판촉 광고에 적합한 광고자료 등을 공급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
2. Company는 신제품의 도입 또는 설치·유지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적정수의 Distributor 소속 기술 인력을 ○○에서 훈련한다. 이 경우 파견된 Distributor 소속 기술인력의 왕복항공비, 식대, 숙박비 기타 경비 및 Company 소속인원의 상기비용은 Distributor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기술지원과 자료는 영어로 한다.

제 7 조 【부 품】

1. Distributor는 원활한 A/S를 위해 충분한 부품재고를 유지해야 하며, Company는 Distributor에게 필요 부품의 내역을 알려준다. 부품재고 수준은 발주 전에 사전 협의 확정한다.
2. Company는 Distributor가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구매하는 한, 제품부품을 Distributor에 공급하며, Distributor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품의 Distributor에 대한 최후 선적 일로부터 ○년 간 공급한다.
3. 부품의 가격은 당사자간 합의한다. Company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Distributor는 제품의 최종 선적 일로부터 ○년 간 Company의 공급처로부터 표준부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

제 8 조 【검사 및 품질보증】

1. Distributor는 제품 인수 후 즉시,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품질수준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검사하거나 검사시켜야 한다. 적절한 검사 후 품질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Company는 불량 제품 또는 불량 부품을 교체하고 Distributor가 실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 Company는 제품이 소재 및 작업상 하자 없음을 보장한다. 이 보장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오용, 취급부주의, 사고, 남용
 - 2) 부적절한 수리 또는 변경
 - 3) 사용법에 위반된 사용 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제품"하자에 관한 Distributor의 클레임은 제품인수 일로부터 ○일 내에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적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4. 시장성 또는 특정용도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보증 기타 여타의 명시 묵시적 보증은 본 건 거래 및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9 조 【 Distributor의 책임 】

1. Distributor는 그 자신의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판촉물 배포, 멀티미디어 광고 시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2. Distributor는 수요자의 수요에 적시 부응하기 위해 제품의 적정재고를 유지한다. 또한, Distributor는 적절한 대체 부품재고, 시설 및 인력을 유지하여 고객에 대한 적절한 A/S를 제공한다.
3. Distributor는 제품을 적절히 운송, 취급, 보관하여 제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Distributor는 제품에 대해 제조물 담보 기타 적절한 보증을 확보하여 그 자신 및 Company를 보호해야 하며,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Company를 면책시켜야 한다.
5. Distributor는 그 비용으로 제품의 광고 판촉을 하고 판매지역에서 제품의 최고판매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필요 시 Company는 별도 합의하는 협찬 광고 계약에 따라 협찬광고를 지원한다. 제품광고 및 판촉의 형태는 시행 전에 Company에 제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Company가 제출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광고 및 판촉물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6. Company가 본 계약 하의 Distributor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 할 경우 Distributor는 즉각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 정보요청 】

Distributor는 Company'의 제품판매 현황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

1. 판매지역에서의 분기별 활동보고서 등 보고서에는 제품의 판매가격 및 수량, 지역별 판매내역, 추천 소매가격표, 장래의 광고 및 판촉계획, 마케팅, 판매실적 분석, 가격정책에 관한 계획, 주요고객에 대한 성과 및 제안 등이 포함된다.
2. Distributor 보유 제품 및 부품 재고에 대한 월간 보고서

제11조 【 상 표 】

1. Company는 계약기간 중, Distributor에게 Company가 판매지역에 등록한 상표(이하 "상표")를 판매지역에서의 판촉을 위하여 사용할 비독점 권리를 부여한다. Distributor의 "상표" 사용 시 상표가 Company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2. Distributor가 전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Company에게 사전에 그 사용 형태 및 카타로그, 전단, 포스터, 신문 등 상표가 포함된 자료의 샘플을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될 내용의 샘플을 사전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든 "상표"의 사용방법 및 그 변경은 Company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승인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3. Distributor는 제품에 각인되거나 사용되는 "상표", 상호, 디자인, 저작권 기타 재산적 권리(이하 "재산권")는 Company에 전속되는 재산임을 확인한다. Distributor는 "재산권"에 대해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4. 본 계약기간 또는 그 이후에도 Distributor는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 1) "상표" 또는 유사상표를 Company 제품 이외의 제품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다.

- 2) 제품 또는 기타 물건과 관련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직간접적으로 등록 출원하지 못한다.
5. Distributor는 Company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공인된 "제품" 판매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6. 제3자의 "상표"권 또는 Company 영업권 침해 사실을 Distributor가 발견 하거나, 제3자가 Distributor의 "상표"사용이 동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Company 또는 Distributor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Distributor는 즉시 Company에 동 사실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Company와 협력한다.
7.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그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Distributor는 "제품"의 판매점임을 내세울 수 없으며, Company의 상호, "재산권" 기타 유사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8. Company는 판매점지정을 등록하거나 Distributor가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9. Distributor는 제품에 부착된 상표, 일련번호, 모델번호, brand, 상호명을 Company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변경, 회손, 제거, 은폐, 손상시킬 수 없다.

제12조 【 Distributor의 지위 】

1. 본 계약은 Company와 Distributor 간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Distributor는 Company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istributor는 Company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못하며, Company 명의로 의무나 책임부담 또는 보증을 할 수 없다. Distributor는 제품의 구매 및 판매사업을 자신의 계산 비용 위험하에 수행한다.
2. Distributor는 필요한 승인을 받는 등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하의 Distributor의 이행과 관련하여 판매지역을 관장하는 정부 또는 그 기관이 시행하는 법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3. Distributor는 Company와의 거래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제품"정보 및 Company의 회사정보(가격, 할인, 판매조건, 고객, 업무, 제품, 제품명세를 포함)의 비밀을 Company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3조 【 계약기간 】

1.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발효하며, 제14조에 따라 해지되지 않는 한 서문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계약기간 또는 연장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계약종결의사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으면 ○○동안 자동연장 된다.
3.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각 기간의 최소구매량을 검토하여 각 기간 개시 전 ○일 내에 당사자간 서면 합의한다.

제14조 【 계약해지 】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Company는 Distributor에 대한 사전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Distributor에 파산, 지급불능, 재산관리인 지명이 있을 때
 - 2) Distributor가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계약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3) Distributor가 폐업하거나 정상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 4) Distributor가 자신의 이행할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고 동 위반 등의 치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위반이나 불이행을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 5) Distributor가 제품과 경쟁되는 상품제조업자를 취득하거나 동업자에 취득된 경우

2.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동 통보일로 부터 3개월에 발효되는 조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Distributor가 제5조에 규정된 최소구매요구량을 Company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 Company는 본 계약을 해지하고, 최소구매량 미달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판매기회상실 포함)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영역 내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4. 다만, 양 당사자는 Distributor의 구매량 미달로 인한 손해의 산정이 매우 어려운 점은 인정하여, 일시금 US \$○○○ 을 손해배상액(합의배상액)으로 한다.
5. Company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의무는 계약해지와 동시 이행기가 도래하며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로 Distributor,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6.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사유 여하는 불문하고, Company는 Distributor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및 그 부품을 FOB 선적가에서 실 반송운임을 더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제15조 【면책】

Distributor는 Distributor의 행동, 영업활동, 의무이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신체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부터 Company를 면책시켜야 하고, Distributor 자신이 방어해야 한다.

제16조 【적용법 및 중재】

1. 본 계약은 ○○법의 적용·해석을 받는다.
2.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제1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1.
- 2.
- 3.

제18조 【기타사항】

1. 본 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Company와 Distributor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2. 본 계약의 변경 및 수정은 본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3. 본 계약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들을 구속한다.
4. 본 계약의 양도는 타방 당사자간의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
5.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타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동 조항 위반의 계속적 목인이나 동 조항의 변경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의사소통을 위해 본 계약은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나, 영어본만이 구속력을 가진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Company와 Distributor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Company)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Distributor)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